

##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및 철거절차



주민신청(상시)

(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)

대상자 선정

(시·군·구)

대상자 통보

(시·군·구 ▶ 주민)

수요신청

(시·군·구 ▶ 시·도  
▶ 환경부)  
[전년도 4월]

확정물량 및 예산통보

[환경부 ▶ 시·도  
▶ 시·군·구]  
[전년도 12월~1월]

지침시달 및 국고교부

[환경부 ▶ 시·도  
▶ 시·군·구]  
[1월]

정산보고

(시·군·구 ▶ 시·도  
▶ 환경부)  
[사업완료 후 30일 이내]

실적평가

[환경부]  
[익년 1월]

사업시행

면적조사, 철거진행  
(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위탁처리)  
[2~12월]

#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안내

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**슬레이트 철거**를 통해  
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.



## [ 슬레이트 정부대책 Q & A ]

**Q** 슬레이트는 왜 철거·처리하여야 하는지요?

**A**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10~15%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이기 때문입니다.

**Q** 전국에 슬레이트 건축물은 얼마나 되며, 정부의 처리대책은 어떤가요?

**A** 141만동이며 주거용이 73만동을 차지하고 있고, 2021년까지 약 19만동의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
**Q** 슬레이트 처리 지원 성과는?

**A** '11년부터 정부지원을 시작하여 '14년까지 약 5만동의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·처리하였습니다.

**Q** 주택외 비주거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도 지원하나요?

**A**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며, 공장, 축사 등 비주거용의 지원에 대해서는 중·장기적으로 검토·추진할 계획입니다.

**Q** 슬레이트 지붕을 개인이 철거할 수 있나요?

**A**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, 석면비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 
※ 석면해체·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스스로 해체·제거 가능

## 슬레이트 철거·처리 지원사업 안내

지원대상

• 슬레이트로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

지원범위

• 슬레이트 철거, 운반, 처리에 드는 비용

신청방법

• 슬레이트 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에 신청

## [ 슬레이트 철거·처리 Q & A ]

**Q**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요?

**A**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에게 슬레이트 철거·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, 지역여건에 따라 철거비 전액지원 합니다.  
※ 국고는 가구당 168만원 지원, 지방비는 국고이상 편성하여 자부담 최소화

**Q** 신청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?

**A** 시·군·구(환경 및 건축관련) 및 읍·면·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적격여부 등을 판단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대상자로 결정됩니다.  
※ 정기 신청(1월말), 수세연중

**Q**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대상에 부속건물도 지원 가능한가요?

**A** 주택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하여 위치한 보관창고, 개인축사 등은 부속건물에 포함되어 지원가능합니다.